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16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민병덕 · 박지원 · 최혁진

이용선 · 김문수 · 장철민

김남희 · 전용기 · 이강일

이주희 · 이광희 · 진성준

황정아 · 양부남 · 김승원

박정현 · 박홍배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업무와 인가 등 감독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규제업무라는 점에서 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주무부처를 기업의 육성정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육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9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77조제1항제6호 중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는”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제2항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4조제1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로 한다.

제88조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u>공정거래위원회는</u>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 ----- ----- ----- ----- ----- -----.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u>공정거래위원회에</u>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1조(설립인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정관) ① (생략)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u>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 ----- -----.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공정거래위원회는</u>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	제48조의2(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 -----

<p>본다.</p> <p>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p>1. ~ 9. (생 략)</p> <p>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u>공정거래위원회</u>의 승인을 받은 사업</p> <p>② (생 략)</p> <p>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 규정을 정하여 <u>공정거래위원회</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u>공정거래위원회</u>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u>공정거래위원회</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p> <p>③ <u>공정거래위원회</u>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p>	<p>-----.</p> <p>제65조(사업의 종류) ① -----</p> <p>-----</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p> <p>-----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6조(공제규정 등) ① -----</p> <p>-----</p> <p>-----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p> <p>-----</p> <p>-----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p> <p>-----.</p> <p>② -----</p> <p>-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u>-----</p> <p>-----</p> <p>-----</p> <p>-----.</p> <p>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p> <p>-----</p> <p>-----</p>
---	---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 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
로 본다.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 ③ (생략)

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
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
· 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
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면, 제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77조(사업의 종류)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② · ③ (현행과 같음)

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 ----- -----.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u>공정거래위원회는</u> 이 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 ----- ----- -----. -----.
③ ~ ⑤ (생략) ⑥ <u>공정거래위원회는</u>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도 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 · 검사 ·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 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u> ----- ----- ----- ----- -----. -----.
⑦ <u>공정거래위원회 및 시 · 도</u> 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 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 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⑦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
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
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협회에 대하여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 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합 ·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벤치기업부장관에게 중.

제84조(준용 규정) ① -----

<p>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 · 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p>	<p>-----.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으로----- ----- -----. -----.</p>
<p>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 · 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p>	<p>② ----- ----- -----. ----- ----- -----“<u>중 소벤처기업부장관</u>”으로----- -----.</p>
<p>제8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u> 또는 시 · 도지사가 부과 · 징수한다.</p>	<p>제8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중소벤처 기업부장관</u>----- -----.</p>